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1가합5876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벚들

담당변호사 이나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이강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배향미

변론 종결 2024. 7. 12.

판결 선고 2024.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2020. 9. 21.자 재산분할협의를 1,654,023,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4,0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피고(D생)는 1999. 3. 30. C(E생)과 혼인한 후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 2) 원고는 C과 동서지간이다.
- 3) F은 C의 형이다. C은 F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H 아파트 취득

- 1) 피고는 2011. 2. 18.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아파트 J호(전용면적 59.98m², 이하 '기존 H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893,000,000원).
- 2) 피고는 2013. 12. 22. K, L에게 기존 H 아파트를 856,5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14. 2. 7.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아파트 M호(전용면적 84.982m², 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1,265,000,000원).

다.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0. 2. 11. G, F,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20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C에게 G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2,295,500,000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9. 6. 20. G 명의의 2,608,600,000원(이자 포함 금액, 변제기 2019. 12. 20.)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G와 F,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11. G와 C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G, C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59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0. 6. 1심 판결 중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22다2918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라. 피고와 C의 이혼 및 재산분할협의

- 1) 피고는 2020. 9. 21. C과 협의이혼하였다.
- 2) 피고와 C은 각자 명의 재산·채무를 각자 보유·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C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이 사건 H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와 C이 이혼할 당시 보유·부담하던 재산·채무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므로, 각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 50%를 보유·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어야 하고, 이 경우 C은 피고로부터 1,285,976,500원(= 적극재산의 50%인 2,671,976,500원¹⁾ - 소극재산의 50%인 1,386,000,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와 C이 각자 명의 재산·채무를 그대로 보유·부담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C은 368,047,000원(= 116,994,000원 - 485,041,000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피고는 2,940,000,000원의 순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1,654,023,500원(= 1,285,976,500원 + 368,04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경기도 김포시 N	C	906,959,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	- 485,041,000원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	C	896,994,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116,994,000원
3	이 사건 H 아파트	피고	3,540,000,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2,940,000,000원2) 2024.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4,742,95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합계	5,343,953,000원	2,772,000,000원	2,571,953,000원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도 그 재산권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해 2,60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C의 채무초과

1	P Q호	상가	1,344,475,800	X, Y, C 각 3분의 1 지분 공유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C의 책임재산에서 제외
2	P R호	상가	698,394,000		
3	P S호	상가	534,225,000		
4	P T호	오피스텔	97,350,400		
5	U V호	상가	감정신청하지 않음		
6	U W호	상가	370,229,400		
7	U Z호	상가	551,553,800		
8	U AA호	상가	320,361,900		
9	U AB호	상가	629,735,400		

1	P Q호	상가	1,344,475,800	X, Y, C 각 3분의 1 지분 공유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C의 책임재산에서 제외
10	U AC호	상가	426,146,400		
11	전북 진안군 AD	전	4,222,800	C 단독소유	-
12	전북 진안군 AE	답	22,276,800		
13	전북 진안군 AF	답	33,375,600		
14	전북 진안군 AG	대지	19,147,770		
15	전북 진안군 AH	전	126,642,600	C, AL, AM 각 3분의 1 지분 공유	-
16	전북 진안군 AI	답	41,276,400		
17	전북 진안군 AJ	임야	32,308,640		
18	전북 진안군 AK	답	40,576,800		
19	경기 김포시 N	주차장	906,959,000	단독소유	2020. 9. 7.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N 주식회사)
20	강원 원주시 O	주차장	896,994,000	단독소유	2020. 4. 6.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N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해 2,60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AO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C이 2020. 9. 21.경 피고와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C 명의의 재산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 ② 그런데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P 상가 및 오피스텔과 U 상가는 실질적 소유자 F이 X, Y, C에게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공유지분은 C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C이 단독소유하는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 진안군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79,022,970원이고, C이 1/3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순번 15 내지 18번 기재 진안군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의 1/3은 80,268,147원이며, C이 단독소유하는 순번 19, 20번 기재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1,803,953,000원인 점, ④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피담보채무의 130%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순번 19, 20번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1,071,840,000원, 600,600,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와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의 합계는 1,963,244,117원(= 79,022,970원 + 80,268,147원 + 1,803,953,00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는 약 4,281,040,000원(= 2,608,600,000원 + 1,071,840,000원 + 600,600,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C은 위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는 C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C 명의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1,654,023,5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위 돈을 지급받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자 C의 재산처분행위는 수반되지 않았지만 C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적게 받는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로서 재산분할 전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고(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혼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원상회복되는 것은 심판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일 뿐이며 위 권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도 없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을 인용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구실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이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공동담보의 감소가 수반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손승온

판사이강민

판사임민희

1) 2024.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571,95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2024.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4,742,95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